

# 경안고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이용수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및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경안고등학교 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 학교의장을 말한다.
2. 사용자 :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각종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3. 사용시간 : 학교 시설을 사용한 시간을 말한다.

## 제3조(학교시설물 개방원칙)

관리자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활동,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경우 미개방 사유 발생시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시설물의 개방시간)

체육관	개방	평일 18시~20시, 토요일 07시~20시, 일요일 07시-20시
운동장	개방	평일 18시~20시, 일요일 07시-20시
교실	개방	대학교 및 공무원 시험등만 개방

## 제5조(학교시설물의 신청절차)

학교시설물 사용희망시 학교시설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행정실 **시설사용담당자**와 **일정협의** 후 이용 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별표 1]서식으로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6조 (사용허가)

관리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허가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7조 (개방시설의 종류 및 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자는 다음의 금액을 이용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이용전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서면 또는 구두로 허가 받은 후 당일 납부할 수 있으며 장기간 사용 시 별도로 관리자가 결정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금액에서 정한 사용료 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으며, 사용료 감면은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6항을 따른다.

##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	사 용 료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체육관	20,000	30,000	40,000
운동장	10,000	20,000	30,000
기 타	1. 상기표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 목적이나, 시급성, 중요도, 보안,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	사 용 료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10,000	20,000	30,000
특별교실	40,000	60,000	80,000
체육관	40,000	60,000	80,000
운동장	20,000	40,000	60,000
기 타	1. 상기표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 목적이나, 시급성, 중요도, 보안,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 제8조 (사용료 반환)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 반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 제9조 (원상복구)

사용자는 관리자로부터 이용을 허가받아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2. 단체로 이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을 허가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시설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관리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 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제10조 (이용수칙 및 홍보)

①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학교시설 개방안내[별표 2]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게 학교 정문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제11조 (이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5. 기타 시설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1.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12조 (사용 허가의 취소 및 정지)

관리자는 사용 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 및 정지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 제13조 (사용전후 확인 유무)

①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이용 전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자(당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이용한 후에는 그 내부 및 주변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 제14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 또는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자가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전적으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15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비의 설치나 철거 및 원상복구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제16조 (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별표1]

## 학교시설물 사용 신청서

1. 사용일시 : 20 년 월 일( 요일) 시 - 시( 시간)
2. 사용위치 :
3. 사용목적 :
4. 사용인원 :
5. 사용단체명 :  
    가. 대표자 인적사항 : 성명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나. 전화번호 :
6. 사용료 :
7. 사용조건  
    가.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학교 시설물 파손시 변상해야 합니다.  
    다. 사용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고 쓰레기는 되가져 갑니다.  
    라.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운동장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 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됩니다.  
    마. 사용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기구, 물품 등에 대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 단체사용시 통제요원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방안을 확보한다.

위 조건을 승낙하고 학교시설물을 사용할 것을 신청합니다.

20 . . .

결재	계	실장

대표자 : (인)

----- 자르는 선 -----

아래와 같이 경안고등학교 학교시설물 사용을 승낙합니다.

1. 사용일시 : 20 년 월 일( 요일) 시 - 시( 시간)
2. 사용위치 :
3. 사용목적 :
4. 사용인원 :
5. 사용단체명 :  
    가. 대표자 인적사항 : 성명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나. 전화번호 :
6. 사용료 : 원
7. 사용료입금 :

경 안 고 등 학 교 장

[별표2]

## 학교시설 개방안내

### □ 개방시간

체육관	개방	평일 18시~20시, 토요일 07시~20시, 일요일 07시-20시
운동장	개방	평일 18시~20시, 일요일 07시-20시
교실	개방	대학교 및 공무원 시험등만 개방

※ 예외 : 학교행사, 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이용수칙

1.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사용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고 쓰레기는 모두 가져가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운동장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 유발 등으로 학업방해 및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됩니다.
4. 교내에서는 취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시 사용자는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장기 사용 시 학교행사 및 공공기관의 행사 등으로 학교시설 사용 시에는 사용자와 사전 협의 후 학교 또는 공공기관 행사를 우선으로 합니다.
6. 사용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기구 물품 등에 대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7.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입금하셔야 하며,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미리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8.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가. 농구장 및 육상트랙을 훼손하는 장비나 용구 사용 금지  
(일반축구화, 줄다리기,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 나. 학교내 절대 흡연, 음주행위 및 화염성 물질(폭죽)등 반입 금지
  - 다. 학교내 애완동물 절대 출입 금지
  - 라. 차량은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고 운동장내 절대 진입 금지
9. 사용완료 후 책임자는 당직근무자에게 청소상태 확인을 받은 후 귀가합니다.